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풀 구성안

(‘23.11.27.(월), SW시장환경개선팀)

□ 심의위원 풀 구성 및 운영

- (목적)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인정 요청에 대한 심의위원 구성

- (근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13조

※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내외의 심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 추천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속된 해당 공무원으로 한다.

- (구성) ①국가안보(국방·외교·치안·전력·기타국가안보), ②신기술(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분야 내 세부 부문별 4~5명 내외

- 총 50명 내외 위원 후보군을 구성하여 위원회 개최 시마다 9명 내외 위원 선발

- (구성방법) ①국가안보(국방·외교·치안·전력·기타국가안보), ②신기술(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분야 내 세부 부문별 4~5명 내외

- 관계부처 추천 및 공공기관 전문가 추천 선발

- (임기) 위촉일로부터 2년(1회 연임가능)

- (운영) 평균 매월 1회 이상 개최(단, 심의안건이 여러 건인 경우 차수 분리 개최)

※ 심의 신청서 접수(전월 말일) → 분야별 심의안건 분류(1주차) → 분야별 전문 위원 선발(2주차) → 분야별 심의(3주차)

- 추진 일정(안)

- 관계부처 추천 협조문 발송 및 공공기관 전문가 풀 협조 : 11.27.(월)

- 심의위원 신청서 접수 : 11.28.(화) ~ 12.8.(금)

- 심의위원 선발 및 확정 : 12.11.(월) ~ 12.14.(목)

- 심의위원 후보군 구성 보고 및 선발 안내 : 12.15.(금)

참 고

관련 규정 및 자격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① 정부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육성을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금액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이하 이 조에서 “대기업”이라 한다)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금액은 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일괄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금액 중 낮은 금액을, 소프트웨어 유지 및 관리 사업이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평균 연차별 금액을 말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기업(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인 대기업만 해당한다)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1.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경우. 이 경우 국가기관등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국방·외교·치안·전력(電力),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인 경우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되어 관보에 고시된 사업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사업인 경우

4. 제40조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인 경우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인 대기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 또는 제4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사유가 적절한지 평가하고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가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내외의 심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 추천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속된 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이나 소프트웨어관련학과, 공학, 경영학 등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국·공립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기술분야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5. 각호와 동등이상의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④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장은 심의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진다.
4. 위원회는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이해관계자,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청취하여 판단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심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위원회를 복수로 설치하여 각 위원회별로 심의대상을 분리할 수 있다.